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2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 미만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재무자원 심사

2.1 재무자원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 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2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처리됩니다.

2.3 외감법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1.1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자료가 관련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경험자원 평가

심사항목	평가 기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Ⅲ유형	배점한도 적용
최근 5년간 업종실적	500억미만~300억이상 평점 적용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3.1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의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기준금액(추정가
격+부가세)은 **50,463,741,916원**입니다.

3.2.1 해당 실적은 입찰자가 관련협회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3.3. 준공기한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성성 평가

3.3.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3.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2024년 8
월 31일 이전 입찰공고 미적용 대상

4. 인적자원 평가

심사항목	심사공종	평가 기준
경력기술자	건축(비주거)	건축-비주거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일반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건축(비주거)	경력심사는 건축-비주거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합니다.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에서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참여한 경 력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합니다.

4.1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보유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11.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 제9호>

4.1.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8호>

4.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 500억원 이상 적용) 심사 시, 경력은 건축-비주거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4.2.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4.2.3.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4.3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11.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4.3.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5. 시공평가 결과 심사

5.1 시공평가 결과는 건축공사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합니다.

5.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5.1.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5.1.3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1)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 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2) 우리 기관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5.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6.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심사

6.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6.2 신기술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11.1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7.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7.1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8.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평가하고,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8.2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포함)에 대해 평가합니다.

8.3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8.3.1 또한, 입찰자가 8.3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11.1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8.3.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9. 사회적 신인도 심사

9.1 사회적 신인도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0.2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건축공사업 45,876,129,014원입니다.

10.2.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1.1 본 공고문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장혁신TFT(우편번호 633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연구동 2층)에 아래의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1) 공문(당해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2) 사전심사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1호>)
 - 3)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면허수첩
 - 4) 사전심사 자기평가 심사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2호>)
 - 5)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3호>)
 - 6) 업체현황 조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3호>)
 - 7)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 8)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 9)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10)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3) 결산서 감사보고서
 - 13) 신인도 관련 서류
 - 14)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1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 11.2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 EXCEL 파일 포함 제출
- 11.3 입찰참가자격자 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12.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 12.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45,876,129,014원**입니다.
- 12.3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12.3.1 설계분야 입찰참가자는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12.4 본 공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가 2개사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는「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2절 6. 마.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12.5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 (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2.6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해서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요청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 및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2.7 사전평가자료는 평가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평가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12.6 본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 관련 문의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공장혁신TFT (☎ 064-786-42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구매계약팀 (☎ 064-780-3415)

【붙임 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1-2)업종*		1-3)공종그룹**		
3)시공사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 + 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II. 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행안부 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3] 동일공종그룹 구분표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